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1.2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김은진)

❑ 제안이유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2022. 9. 28. ~ 2022. 10. 18.):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개정 취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률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2019. 1. 1.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2022.1.1.시행]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경감률을 조례로 위임하였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안 제10조**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제도를 법정제도인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하여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함[2)]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에 위임하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2) 세액공제 금액

< 현행 >

(단위 : 원)

신청 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합계 (세액공제+마일리지)	공제 한도 (지특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250	350	850	**600** (30만원 미만) **1,100** (30만원 이상)	250 ~ 800
자동이체	250	0	0	**250**	
전자송달&자동이체	600	500		**1,100**	500 ~ 1,600

< 개정 후 >

(단위 : 원)

신청 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액		합계 (세액공제+마일리지)	공제 한도 (지특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800	0(폐지)	0(폐지)	**800**	250 ~ 800
자동이체	800	0	0	**800**	
전자송달&자동이체	1,600	0(폐지)		**1,600**	500 ~ 1,600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주민 편익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되어 세금 체납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정비는 구민의 납세편의 도모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을 각각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